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707
----------	-------

발의연월일 : 2024. 5. 29.

발 의 자 : 이자스민·배진교·양경규
장혜영·강은미·도종환
심상정·황보승희·정청래
김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회적 파급력이 큰 방송·영화·인터넷·미디어 등의 콘텐츠 제작 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다문화·소수자문화 등에 대한 폄하·비하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현행법상 불분명

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및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콘텐츠 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콘텐츠”라 한다) 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콘텐츠 제작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u>지방자치단체</u>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u>지방자치단체</u>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콘텐츠 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콘텐츠”라 한다) 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콘텐츠 제작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